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월 24일에서 2023년 1월 24일로, 광역도시계획수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두고 있는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31일에서 2023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 .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전일제공무원 정원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또는 연구사 1명)”을 “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또는 연구사 1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제1항 중 “2021년 1월 24일”을 “2023년 1월 24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3월 31일”을 “2023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32”를 삭제하고, 일반직 계 “131”을 “132”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

서기보 “6”을 “7”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일반직 계 1.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33”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 “132”를 “133”으로 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을 “7”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일반직 계 1.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중 1. 제12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1월 24일) “2021년 1월 24일”을 “2023년 1월 24일”로 하고, 2. 제1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3월 31일) “2021년 3월 31일”을 “2023년 3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u>5퍼센트</u> 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정원 중 1명(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0조(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u>7퍼센트</u> ----- ----- ----- ----- ----- ----- ----- ----- -----.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박물관 건립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u>그 밖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또는 연구사 1명)</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 ----- ----- ----- ----- ----- ----- ----- ----- ----- <u>그 밖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또는 연구사 1명)</u> ----- -----.

제10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시간
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
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
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
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
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한시정원) ① 공동캠퍼스
구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
021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에 둔다.

②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업

제10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
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중
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 정원으로 활
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공
무원 정원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에 따른 정원
배정 시 소수점으로 배정하여
운영한다.

제12조(한시정원) ① -----

----- 2
023년 1월 24일-----

-----.

② -----

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1</u> <u>년 3월 31일</u>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 둔다.	----- ----- ----- <u>2023</u> <u>년 3월 31일</u>-----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33	13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32	<삭 제>	
·	·	·	
·	·	·	
일반직 계	131	132	+1
·	·	·	
·	·	·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	7	+1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삭 제>	
일반직 계	1.0	<삭 제>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0	<삭 제>	-1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34	134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33	<삭 제>	
·	·	·	
·	·	·	
일반직 계	132	133	+1
·	·	·	
·	·	·	
·	·	·	
·	·	·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	7	+1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	<삭 제>	
일반직 계	1.0	<삭 제>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0	<삭 제>	-1